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6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서명옥

김형동 • 박충권 • 김소희

김승수 · 고동진 · 권성동

윤한홍 · 강대식 · 이만희

이상휘 · 이달희 · 이종욱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·서비스 등이 국가·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·증명하는 것으로,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·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바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(한국소비자원)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,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
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 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,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 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의2 등). 법률 제 호

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"(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)"을 "(소비자중심경영사업 자 지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 경영에 대한 인증(이하 "소비자중심경영인증"이라 한다)을 할"을 "사 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3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"으 로. "인증의"를 "지정의"로 하며. 같은 조 제4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 증의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"로,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 하 고. 같은 조 제5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"를 "소비자 중심경영사업자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" 로. "인증의"를 "지정의"로 하고. 같은 조 제7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 증의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"로 한다.

제20조의3의 제목 "(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)"을 "(소비자 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소

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(이하 "지정심사기관"이라 한다)"로,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(이하 "인증업무"라 한다)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(이하 "지정심사업무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"를 "지정심사업무 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 중 "인증기관이"를 "지정심사기관이"로, "인증기관의"를 "지정심사업무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인증업무를"을 "지정심사업무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"인증업무를"을 각각 "지정심사업무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정심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. 이 경우 징수한 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20조의4의 제목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자가"로,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

증을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"를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"로, "인증이"를 "지정이"로, "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"을 "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소비자중심경영의 인	제20조의2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<u>증)</u>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	지정) ①
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	
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	
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	
(이하 "소비자중심경영"이라 한	
다)을 하는 <u>사업자에 대하여</u>	<u>사업자를 소비자</u>
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	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
(이하 "소비자중심경영인증"이	
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	
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	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
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	<u>정받으려는 자는</u>
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	
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	
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	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
<u>사업자는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정받은 자는</u>
바에 따라 그 <u>인증의</u> 표시를	<u>지정의</u>
할 수 있다.	<u>.</u>
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	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
기간은 그 <u>인증을</u> 받은 날부터	<u>의지정을</u>
3년으로 한다.	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	⑤
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	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-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<u>소비자중</u> 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<u>인증의</u> 심사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3(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 관의 지정 등)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 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 다)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에 관한 업무(이하 "인증업무"라 한다)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<u>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에</u>
<u>.</u>
⑥소비자중
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
<u> 자에</u>
<u>지정의</u>
<u>.</u>
⑦
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지정의
<u>.</u>
제20조의3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<u>지정 심사기관 등)</u> ①
소비자중심경영사
업자 지정 심사기관(이하 "지
<u>정심사기관"이라 한다)</u>
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(이하
"지정심사업무"라 한다)

- ② <u>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</u> <u>기관의</u>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<u>인증기관</u>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인증기관의</u>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 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<u>인증업무를</u> 행한 경우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0조의2제7항에 따른 <u>소비자</u> 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를 위반한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인증업무</u>를 거부한 경우
- 5. (생략)
- 6.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

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
지정심사기관의
③ <u>지정심사</u>
<u>기관이</u>
<u>지정심</u>
사기관의
1. (현행과 같음)
2
기정심사업무를
3
<u>소비자</u>
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
4 <u>지정심사</u>
업무를
5. (현행과 같음)
6

으로 인하여 <u>인증업무를</u>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<<u>신</u> 설>

제20조의4(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제 취소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 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<u>소비</u> <u>자중심경영인증의</u>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지정심사업무를
④ 지정심사기관은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
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
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
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.
이 경우 징수한 수입은 공정거
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
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
<u>용할 수 있다.</u>
]20조의4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지정의 취소) ①
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
<u>지정받은 자가</u>
<u>지정</u>
<u>을</u>
<u>지정을</u>
1
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
2 <u>소비</u>
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

- 3. <u>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</u>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 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<u>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</u>
<u> </u>
②
② 소비자
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
<u> 자에지정이</u>
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
<u>지정을</u>